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애큐온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5.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경영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총괄 기능 강화

애큐온저축은행(이하 '회사')은 이사회에서 2024년 당기순이익 목표 등을 포함한 경영목표를 의결한 이후,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및 환입 예상, 비용 절감계획을 반영하여 2024년 당기순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이사회가 수정된 경영목표를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지 않고 2024년중 분기별 경영실적 보고시에 수정된 경영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절차로 갈음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는 앞으로 경영계획상 당기순이익 등 경영목표를 일부 조정할 경우 이사회에 별도 안건으로 부의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 경영목표 결정에 관한 이사회의 총괄.감시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검사기준일 현재 회사는 총수신 대비 퇴직연금 비중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퇴직연금 감축분을 수시입출식 요구불예금 위주로 충당함에 따라, 검사기준일 현재 총수신 대비 요구불예금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자금 조달구조의 단기화로 유동성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퇴직연금사업자 중 상위 5개 사업자에 대한 편중도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의 수신 비중 축소 및 유동성위험의 확대 방지를 위해 장·단기 수신 비중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 등 수신의 만기 분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자별 취급 한도를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한 건전성 지표 관리 불합리

회사는 월중에 여유자금을 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월말에는 국채, 통안채 등을 담보로 하는 단기 환매조건부채권(RP)에 자금을 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고 총여신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기준일 현재 회사는 만기 2일인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증가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감소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지표 관리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단기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에 대한 합리적 운용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 업무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가) 차주 앞 PF 대출 잔액 통지 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고 예방대책 중 하나로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PF대출잔액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차주에게 PF대출 잔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고, 한도성 PF대출을 실행한 일부 차주에게만 대출잔액을 통지하고 브릿지성 PF대출 등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PF대출 잔액 통지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PF성 대출 전체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대출잔액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순환근무제 실효성 제고

내규 「금융사고 예방지침」 및 「순환근무제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면 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함에도,

* 영업점 동일점포 3년, 본점 5년(순환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통해 예외를 허용)

검사대상기간 중 직원의 실질적인 직무순환 없이 소속팀명 변경을 순환근무로 인정하였고, 동일 영업점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에 대해 예외 승인 없이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회사는 실질적인 직무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순환근무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인력운용상 순환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순환근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증서·실물에 대한 접근통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요증서·실물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 및 반납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4.2.20.~2024.11.28.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요증서*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중요증서의 임의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 법인인감증명서, 보안카드, 인감 도장, OTP 등

회사는 앞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요증서에 대한 반출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중요증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라) 고객 및 거래처의 이해상충 방지대책 강화

회사 내규 「윤리강령」 등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임직원 및 거래처 간 직·간접적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과 거래처간의 금전거래를 예방·적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앞으로 임직원 저축은행 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 누적송금액 등에 대한 결재 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의하면 일정 기간 누적 송금액 기준의 전결권을 신설하여 전결권자의 분할 송금 및 임의 송금을 억제하는 한편, 지점장(부서장) 부재시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사항에 대해 지점장 사후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는 검사착수일 현재 본점의 경우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점의 경우 개별 송금액과 누적 송금액의 전결권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누적송금액 전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사항에 대한 상위 직급자의 사후결재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회사는 본점의 누적 송금액 전결제도를 신설하고, 지점의 누적 송금액 전결권자를 개별 송금액 전결권자의 상위 직급자로 설정하는 한편,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사항에 대한 사후결재를 의무화하는 등 전결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회사 내규 「내부회계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항목을 설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를 공시해야 함에도,

회사는 부정위험 등 회계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통제항목을 내부회계관리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부정위험 방지를 위한 중요 내부통제가 외부감사인 검토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앞으로 부정위험 등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정보 왜곡 방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항목에 통제항목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는 등 금융사고 예방통제에 대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하시기 바랍니다.